

의안번호	2212733
의 퇴 인	박지혜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5.
추 계 번호	25F485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제2호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부분에 재생에너지 등 추가 －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8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9개 분야로 확대	
2	안 제100조의35 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신설 － 공제대상: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－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요건: ①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제조한 재화 ②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재화 ③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된 재화 － 공제내용: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 －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40% － 적용기한: 2035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0조의35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 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고, 국가전략 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조제1항제2호, 제100조의35 등)
 -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8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9개 분야로 확대
 -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등 8개 분야를 포함
 - ※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
 - (개정안) 상기 분야에 재생에너지 분야 추가
 - 분야내 구체적인 기술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[별표 7의2]에 규정
 - 안 제100조의35는 현행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서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일정 요건에 맞게 생산한 경우,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 - 공제대상: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
 - 국가전략기술 활용 재화의 요건:
 - ①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의해 제조
 - ② 해당 재화의 최종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완료
 - ③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
 - 공제내용: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
 -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40%
 - 적용기한: 2035.12.31.
 - ※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, 10년간 이월공제 허용
-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 기술에 추가되는 재생에너지 등의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야의 R&D 및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등의 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

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
- 참고로, 동법 시행령 [별표 7]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은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의 탄소중립 분야(세부분야: 신재생에너지)에 구체적인 기술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[표 1]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상 신성장·원천기술의 재생에너지 등 기술범위

기술분야	기술
탄소중립 (신재생에너지)	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 등 설계 및 제조 기술,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소재 기술, 페로브스카이트 등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,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,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, 발전 기술,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, 폐기물 액화·가스화 기술, 미활용 폐열을 활용한 발전기술 등

주: 기술분야의 ()안은 분야내 세부기술을 의미

- 또한,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기업규모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 등의 현황, 공제규모 등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과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국세청에 따르면 R&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까지는 구분이 가능하나, 기술 분야별로 공제실적은 구분되지 않음
- ※ 참고로, 2024년 법인세 신고기준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: 2024년 법인세 신고기준
(단위: 억원)

구분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R&D 세액공제	19,713	6,164	2,682
통합투자세액공제	14,699	223	599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

- 안 제100조의35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에 대한 법인세액 및 생산비용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나, 제품의 품목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중 공제가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, 생산비용의

산정방식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을 특정할 수 없음

－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는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청정수소 관련 제품, 미래형 이동·운송수단, 바이오의약품 등이 있으나, 세부적으로 특정 제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- 또한,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의 생산여부 요건을 만족하는 비중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향후 세액공제를 추정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